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자원 봉사자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직원에게 추가적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건물 책임 교장은 자원 봉사자가 적절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을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봉사할 자원 봉사자 (예: 주당 15시간 이상), 감독 없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및 모든 자원 봉사자 코치는 자원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적 자원 부처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지 않는 자원 봉사자는 항상 직원 및/또는 일반 자원 봉사자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교육기관의 규칙, 규정 및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503.02-1,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 행동 기준"; 규정 925-1, "외부 출처에 의한 학교 내 자료 및 전달 사항 배포"; 규정 503.04-1, "이해 상충"; 및 규정 771-1,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보고 절차". 자원 봉사자는 학생들이 본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적 의사 소통, 복장 및 전반적인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I. 기밀 유지

자원 봉사자는 학교에서 학생, 직원 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반으로 한 정보는 기밀로 고려되며 학교 또는 학교 외부에서 대화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品行, 학급 수행 및 성취, 학생의 기타 특성이 소문 또는 험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과 다른 사람들의 기밀 유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는 규정 651-2, "학생 공개 정보의 기밀성"에서 설명한 대로 기밀 유지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학생이 민감한 정보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상담 또는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관련 방침 및 규정에 따라 승인된 직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침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 한 학생의 성적, 시험 점수 및 학생 기밀 정보로 간주되는 기타 정보에 대한 유급 직원의 접촉만 허용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II. 보고 요건

자원 봉사자는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례를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법적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는 규정 651-2, “학생 공개 정보의 기밀성”에 설명된 대로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학생 측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는 규정 390-1, "학교기관 보험 적용 범위/학생 관리 시스템"에 따라 요구되는 재산 피해 또는 신체 부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III. 위험 회피

자원 봉사자는 학교에서 일할 때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사건을 항상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인식된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식은 잠재적 함정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및 비언어적 신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정 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는 다음을 피해야 합니다:

- A. 의심 -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인식을 높이고 결과를 고려하고 이 목록의 나머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B. 개인 정보 보호 - 자원 봉사자는 일반적으로 문이 닫힌 빈 방에서 개별 학생 또는 소규모 그룹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회의는 다른 사람, 특히 다른 성인이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C. 비밀 유지 - 자원 봉사자는 학생들과 비밀을 공유 (주거나 받거나)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관계자는 다른 교직원보다 더 많은 권리를 허용하는 특정 훈련을 받지만 어떤 교직원도 기밀 유지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그러한 권리가 없으며 기밀 소통에 관여함으로써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 D. 만지기 -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 접근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치는 잘한 일을 위해 선수의 등을 두드리고 코칭 시연/수업의 일부로 학생의 몸을 제자리로 둘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적절한 접촉과 부적절한 접촉 사이의 경계가 종종 불분명하고 타인의 인식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거나 관리자/피지명인의 특정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 접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 편애 - 모든 학생은 동등하게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편애의 모습은 교직원이 모든 학생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F. 외부 접촉 - 자원 봉사자는 학부모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공 장소에서의 우연한 만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부모가 참석하는 경우 친근한 인사와 짧은 대화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외부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G. 이해 상충 - 자원 봉사자는 자원 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체, 조직 또는 기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외부 코칭, 훈련,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PWCS 학생에게 요청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규정 503.04-1, "이해 상충"에 대한 첨부 I, 이해 상충 공개 양식의 사본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체, 조직 또는 기타 단체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 이해 상충에 대한 완전한 사전 공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자원 봉사자와 함께 일할 학생, 직원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지침이 학교 내 자원 봉사 서비스의 지속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검토한 이 지침의 사본을 제공받아 나중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 봉사자는 수령 확인을 위해 첨부 II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은 학교 단계에서 관리됩니다.